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

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3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, 동법 시행령 제17조 [별표2]에서 정한 기준(금액)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안전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수수료 정비(안 제17조 별표2)

1)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

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: 50,000원

2)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

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: 내용변경 건당 10,000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30. ~ 8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 구분란 제2호 중 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”를 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, 안전성검사 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”로 하고,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3호 구분란 제3호 중 “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”를 “변경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

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: 50,000원

라.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

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: 내용변경
건당 10,000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표2] 수수료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		[별표2] 수수료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	
구분	수수료	구분	수수료
2.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	가.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)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: 50,000원 2) 제품시험 수수료: 기본료, 인건비, 재료비, 감가상각비, 시설유지비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) 공장심사 수수료: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.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)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: 50,000원 2) 제품시험 수수료: 가목2)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.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: 모델당 10,000원 라.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)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: 50,000원 2) 제품검사 수수료: 가목2)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금액 마. <신 설>	2.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, 안전성검사 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			마.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: 50,000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
연 락 처	(043) 870 - 5574